

2020. 2. 6. 10:00

제2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월 2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됨.
 - 본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서비스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실버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여 지역어르신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 위치 : 화원읍 천내리 1, 2리 일원
- 면적 : 150,669㎡(45,580평)
- 총사업비 : 241.5억원(국비 115, 시비 57.5, 군비 57.5, 기금 11.5)
- 사업기간 : 2020. ~ 2023(4년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①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소통’	2,220
	②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	4,380
	합 계	6,600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③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9,140
	④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3,000
	합 계	12,140
골목상권 활성화	⑤ 화원 새싹점포, 으뜸상품 판매센터	620
	⑥ 걷고 싶은 화원 시장길	850
	합 계	1,470
생활 인프라 개선	⑦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3,940
	합 계	3,940
총 합 계		24,150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 328㎡(99평)
 - 건물 연면적 : 562㎡(170평)
 - 건물동수 : 1동(지상4층)
 - 주요시설(안) : 실버 커뮤니티 카페, 공유 작업공간, 치매센터 등
- 사 업 비 : 30억원(국비 15, 시비 7.5, 군비 7.5)
 - 토지 및 건물 매입 6.9억원, 건축공사 18.4억원, 설계/감리 1.1억원, 프로그램 사업 3.6억원

○ 추진상황

- 2019. 8.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 2019. 10. : 공모 최종선정
- 2019. 12. : 2020년도 본예산 수립(36.2억원)
- 2019. 12. : 활성화계획 승인(도시재생 특별위원회)
- 2020. 1. :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20. 2. :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 2020. 3. ~ 5. : 건축설계 공모
- 2020. 6. ~ 10.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0. 11. ~ 2021. 10. : 건축공사 시행
- 2021. 10. : 공사 준공
- 2021. 11. : 실버 커뮤니티 공간 운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취득	계	9 (140)	299,690.14	131,645,085	3 (3)	973.88	2,336,373	12 (143)	300,664.02	133,981,458
	1.매입	3 (129)	253,853.2	62,746,021	1 (1)	328	278,373	4 (130)	254,181.2	63,024,394
	건물	1 (2)	498.8	19,788	1 (1)	83.88	218,000	2 (3)	582.68	237,788
	토지	1 (3)	22,332	8,907,463				1 (3)	22,332	8,907,463
	건물	1 (3)	4,294.39	1,937,813				1 (3)	4,294.39	1,937,813
	토지									
처분	3.기타	3 (3)	18,711.75	58,034,000	1 (1)	562	1,840,000	4 (4)	19,273.75	59,874,000
	계	1 (58)	93,876	2,693,450				1 (58)	93,876	2,693,450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1 (58)	93,876	2,693,450				1 (58)	93,876	2,693,450
	토지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답	답	현풍읍	원교리	718-2	1,319	330,000,000	2020. 8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이전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28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71-4 무성그린맨션 101-1007	곽병근	2019.12. 의회의결	
2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1,098	461,160,000						
3 (건물)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258.8	15,948,000						
4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747	1,153,740,000						
5 (건물)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40	3,840,000						
6	도	도	현풍읍	원교리	1749-33	2,127	189,000,000						
7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	2031.75	8,660,000,000 (사업비)	2021. 8.	회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주채장	주채장	화원읍 설화리	563	38,882.3	38,882.3	50,663,636,9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40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12. 의회의결
9	주채장	주채장	화원읍 명곡리	324	33.5	33.5	36,347,500			"	"	
10	주채장	주채장	화원읍 명곡리	324-1	45.9	45.9	49,801,500			"	"	
11	구거	구거	화원읍 설화리	569	692.2	692.2	71,642,700			"	"	
12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	18,105	18,105	128,726,550			화원 교회		
13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1	7,980	7,980	48,438,600			"	"	
14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09-1	19,834	19,834	123,764,160			"	"	
15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8-9	83	83	8,067,600			기획재정부	국유지	
16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1-8	23	23	2,235,600			"	"	
17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1-9	99	99	9,622,800			"	"	
18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1-3	202	202	19,634,400			"	"	
19	잡	잡	화원읍 명곡리	322-1	34.2	34.2	27,264,240			대구시 중구 명덕로 85 (남산동)	대상에너지주식회사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0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31-4	21,397	21,397	152,132,67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22길 10, 101동 107호(지산동 보성맨션)	최혁 외 2	2019.12. 의회의결
21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7	3,306	3,306	22,679,16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97-2 산신별파 비동 301호	김영숙 외 4	
22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6	417	417	2,710,500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693	석권도	
23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5	8,007	8,007	48,602,490			대구시 서구 내당동318 삼익뉴타운 103동 811호	강다원	
24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8	1,197	1,197	95,760,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43, 501동1601호(미레빌5단지)	구봉일	
25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7	995	995	55,222,500			"	"	
26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1	483	483	26,806,500			대구시 서구 원대동3가 1446-1	김병명	
27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9-8	2,086	2,086	115,773,000			"	"	
28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8	879	879	48,784,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866	김용득	
29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6-1	1,395	1,395	77,422,500			"	"	
30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5	330	330	45,738,000			"	"	
31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6-2	1,069	1,069	148,163,400			"	"	
32	묘	묘	회원읍 명곡리	904	884	884	33,768,8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성 명	
33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7-1	1,537	85,303,5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02-2	김정용	2019.12. 의회결
34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7-2	1,154	64,047,000			"	"	
35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6	502	48,794,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본리리 1-2 창구정만선 101동102호	김진식	
3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5	324	31,492,800			"	"	
3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2	281	27,313,200			"	"	
38	답	전	회원읍	설화리	571-11	433	44,599,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750-2	박성곤	
39	답	전	회원읍	설화리	571-17	23	2,369,000			"	"	
40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11-1	423	23,476,500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41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12	1,388	77,034,000			"	"	
42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11-2	433	115,178,000			"	"	
43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16	952	52,836,000			"	"	
44	목장 용지	목장 용지	회원읍	명곡리	911-3	810	104,733,000			"	"	
45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13	1,334	118,459,2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46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15	1,297		1,297	115,173,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2019.12. 의회의결
47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0	374		374	54,978,000			경북 영주시 중앙로 95번길13(영주동)	윤성훈	
48	전	전	회원읍 명곡리 899	1,104		1,104	162,288,000			"	"	
4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9-2	1,425		1,425	162,022,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53	임제암	
50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9-5	1,150		1,150	111,780,000			"	"	
51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5	840		840	46,620,000			대구시 남구 대명북개로3길71 (대명동)	최명섭	
52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3	664		664	53,120,000			"	"	
53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1	1,323		1,323	73,426,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7, 10동1303호(대곡역1면별)	최영욱	
54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3	631		631	35,020,500			"	"	
55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9-1	436		436	42,379,200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45 411동1802호(도원동,대곡강산1면)	황정숙	
5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9-3	1,021		1,021	116,087,700			"	"	
57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0	575		575	46,000,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16길 43	김인진	
58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2	1,296		1,296	103,680,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16길 43	김인진 외 4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4	632		632	61,430,4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971	정유순 외 2	2019.12. 의회의결
60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9-2	3,306		3,306	47,606,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128-3	박만호 외 1	
61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	731		731	71,053,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714	박춘향	
62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2-1	1,564		1,564	152,020,8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139,미래빌410동1402호	김진태	
63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7	2,522		2,522	261,027,000			대구시 남구 대명로20길 82(대명동)	김석곤	
64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2	1,051		1,051	102,157,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모개골길14	임상호	
65	답	전	회원읍 설화리 579-4	1,293		1,293	147,014,1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708	박재덕	
6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8	949		949	92,242,80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62	김준영	
6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3	1,600		1,600	155,520,00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10-19	김충겸	
68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0	1,322		1,322	128,498,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966	석정호	
6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3	774		774	75,232,8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193	김정수	
70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4	783		783	76,107,600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0 코오롱아파트 4동 203호	임진택	
71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6	1,501		1,501	145,897,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34길13-17, 101501호영광주영합	정쌍복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성	
72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10	258	25,077,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500길 12-8	김미승	2019.12. 의회의결
73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1	899	87,382,800			대구시 달성구 장기로 189, 108동1003호(본리동,상당매안)	주춘숙	
74	답	전	회원읍	설화리	571-12	909	88,354,800			대구시 달성구 진천로3길 85-18(진천동)	박영명	
75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7	820	79,704,000			대구시 달성구 진천동 545-3	임영수	
7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13	208	20,217,6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683	임판수	
7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0-1	46	4,471,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216	박동방 우	
78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2	727	40,348,500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7, 509동109호(광명현대)	김창현	
79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1	1,537	85,303,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2493	신유창	
80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2	1,706	94,683,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천로 304	진공희	
81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24	688	55,04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139, 미래빌 408동904호	김태성	
82	전	과수원	회원읍	명곡리	910	2,079	115,384,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220,미래빌 506동1405호	유혜양	
83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3	879	269,589,3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886	임소암	
84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9-3	932	291,716,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14동1302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김순임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85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9-4	482	150,866,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909-4	박산화	2019.12. 의회의결	
86	전	전	회원읍	명곡리	899-2	1,204	176,988,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8길 7-14(진천동)	진효숙		
87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9	635	50,800,0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78	전영씨 다산공화 중증		
88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7	1,884	104,562,000			기획재정부	국유지		
89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8	1,364	75,702,000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90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8-1	61	3,385,500			"	"	"	
91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9	1,481	82,195,500			"	"	"	
92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30	11,696	649,128,000			"	"	"	
93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1143	802	83,007,000			"	"	"	
94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2-3	94	9,729,000			"	"	"	
95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18	26	2,691,000			"	"		
96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19	26	2,691,000			"	"		"
97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20	36	3,726,000			"	"		"
98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21	7	724,500			"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성	
99	구거	구거	회원읍	명곡리	973	1,330	73,815,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19.12. 의회의결
100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1143-1	1,081	111,883,500			"	"	
101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7	404	41,814,000			기획재정부	"	
102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	16,210.1	972,606,000			국토교통부	"	
103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2-2	13	1,345,500			한국농어촌공사	"	
104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0-2	112	11,592,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	"	
105	대	대	회원읍	성산리	412-1	21,835	8,380,273,000			경찰청	"	
106 (건물)	대	대	회원읍	성산리	412-1	3,926	1,506,787,286			"	"	
107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95	515,070,000			"	"	
108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42.54	423,474,840			"	"	
109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1	202	12,120,000			"	"	
110 (건물)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1	125.85	7,551,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111 (건물)	잡	대	유가읍	용리	31-2	13,445	19,874,000,000 (사업비)	2022.5	호텔 아펠리아 별관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12 (건물)	대	대	현풍읍	중리	506	10,737	29,500,000,000 (사업비)	2022.6.	달성군 교육문화 복지센터 건립	"	"	
113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53	172	10,904,800	2020.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019.12. 의회결
114	대	대	화원읍	성산리	257	258	58,462,800			"	전성배	
115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41	76	1,216,0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16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58	979	67,551,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1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42	155	2,619,5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18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59	258	4,850,4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19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64	245	16,905,000			"	전성배	
120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0	198	3,801,6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1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65	598	41,262,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122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1	169	169	3,075,8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019.12. 의회의결
123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3	1,045	1,045	19,019,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24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46	1,983	1,983	38,073,6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5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2	684	684	12,448,800			"	전병득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271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 대구 북구 산격동 981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85 대구 북구 서변동 694 대구 북구 서변동 1101 대구 북구 동변동 263 대구 수성구 봉무동 18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9 대구 수성구 만촌동 204 다사읍 문산리 269 가창면 대일리 387 가창면 우록리 549 가창면 상원리 278 다사읍 세천리 959 대구 달서구 이곡동 419 대구 북구 공산동 1007	배진호 박노균 서희규 우하춘 구성서 이해춘 구경희 최진환 전병근 하동규 윤안 서병찬 김상익 김두한 구경희 허노학 유효봉	
126	대	대	회원읍	성산리	272	1,421	1,421	388,927,7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대구 남구 남산동 362 대구 중구 대신동 512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40 대구 남구 남산동 407 대구 북구 서변동 885 대구 북구 서변동 857 다사읍 세천리 105 다사읍 영양리 624	윤창한 신춘길 우하갑 서대교 이봉래 이민희 구인회 정영원	2019.12. 의회의결
127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47	5,157	5,157	94,373,100	2020.6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공구 당공파 중중		
128	전	전	회원읍 성산리 279	701	701	18,226,0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공구 당공파 중중		
129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50-4	198	198	3,564,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130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50-3	99	99	1,782,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131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4	506	506	35,420,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132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9-2	198	198	4,197,6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박종석 박영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용희 박재용	
133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5	1,210	53,040,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134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0	1,021	71,470,000	2020.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91 동서장관연립주택 108-109	임영목	2019.12. 의회의결
135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29-1	403	22,285,900			달성군 회원읍 친내리 36-8	서숙이	
136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9-1	7,772	170,764,0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박중석 박영호 김용희 박재용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137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8-2	992	24,601,600	2020.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회원읍 천내리 117 보성아파트 106동 303호	서풍교	2019.12. 의회의결
138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29	85	4,700,500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139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8-1	198	4,910,400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2길 26	이무현	
140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6	3,373	70,158,400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백남길 백남욱 백남현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1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0-13	4,186	7,241,780	2020.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2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0-14	598	1,076,400			"	"	
3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1-1	8,628	15,357,840			"	"	
4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1-2	496	882,880			"	"	
5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1-3	793	1,467,050			"	"	
6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1	529	54,063,800			"	"	
7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3	954	86,337,000			"	"	
8	담	담	옥포읍	기세리	2-1	1,183	120,902,600			"	"	
9	전	전	옥포읍	기세리	3	1,831	165,705,500			"	"	
10	전	전	옥포읍	기세리	4-1	1,402	177,633,400			"	"	
11	전	전	옥포읍	기세리	5	1,302	117,831,000			"	"	
12	전	전	옥포읍	기세리	6	608	55,024,000			"	"	
13	전	전	옥포읍	기세리	7	1,220	110,410,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4	전	전	옥포읍 기세리 8	889	889	889	80,454,500	2020.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15	전	전	옥포읍 기세리 9-1	569	569	569	75,904,600					
16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1-1	506	506	506	67,500,400					
17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2	565	565	565	51,132,500					
18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3	1,177	1,177	1,177	93,218,400					
19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4	621	621	621	49,183,200					
20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5	377	377	377	29,858,400					
2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	3,471	3,471	3,471	20,583,030					
2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7	496	496	496	3,035,520					
2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9	298	298	298	777,780					
2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0	1,289	1,289	1,289	3,364,290					
25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5	384	384	384	810,240					
26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7	20,383	20,383	20,383	41,173,660					
2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8	61	61	61	128,710					
2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3	6,347	6,347	6,347	79,337,5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9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4	2,380		2,380	11,781,000	2020.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30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1	8,132		8,132	16,670,600					
31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3	397		397	837,670					
32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4	793		793	1,704,950					
33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5	3,224		3,224	6,931,600					
34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6	595		595	3,712,800					
35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7	1,983		1,983	4,263,450					
36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1	1,686		1,686	10,318,320					
37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1,983		1,983	25,382,400					
3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298		298	3,814,400					
3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8-4	161		161	28,336,000					
4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9	1,655		1,655	202,737,500					
41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1	255		255	21,471,000					
42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2	836		836	55,176,000					
43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3	476		476	40,079,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 (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44	전	전	회원음	설화리	840-5	922	78,370,000	2020.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45	주차장	주차장	회원음	설화리	840-8	240	64,896,000			"	"	
46	전	전	회원음	설화리	842	1,091	12,328,300			"	"	
47	전	전	회원음	설화리	843	774	8,746,200			"	"	
48	임	임	회원음	설화리	844	760	8,588,000			"	"	
49	전	전	회원음	설화리	844-1	2,106	46,121,400			"	"	
50	대	대	회원음	설화리	838-2	593	289,146,800			"	"	
51	대	대	회원음	설화리	840	329	127,684,900			"	"	
52	대	대	회원음	설화리	840-6	96	25,958,400			"	"	
53	구	구	옥포음	기세리	1-4	11	995,500			"	"	
54	구	구	옥포음	기세리	1-5	41	3,710,500			"	"	
55	구	구	옥포음	기세리	4-2	116	10,226,500			"	"	
56	구	구	옥포음	기세리	9-2	551	49,865,500			"	"	
57	구	구	회원음	설화리	840-9	95	9,500,000			"	"	
58	구	구	회원음	설화리	841-5	137	13,700,000			"	"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가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총 계			토지 1필지, 건물 2동		973.88	2,336,373,600					
토지	대	대	화원읍	천내리	328	278,373,600 (공시지가×면적)	2020.2.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22길 73		한경애
건물	주택	주택	화원읍	천내리	83.88	218,000,000 (개별주택가격)	2020.2.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328	1,840,000,000 (건축비)	2021.1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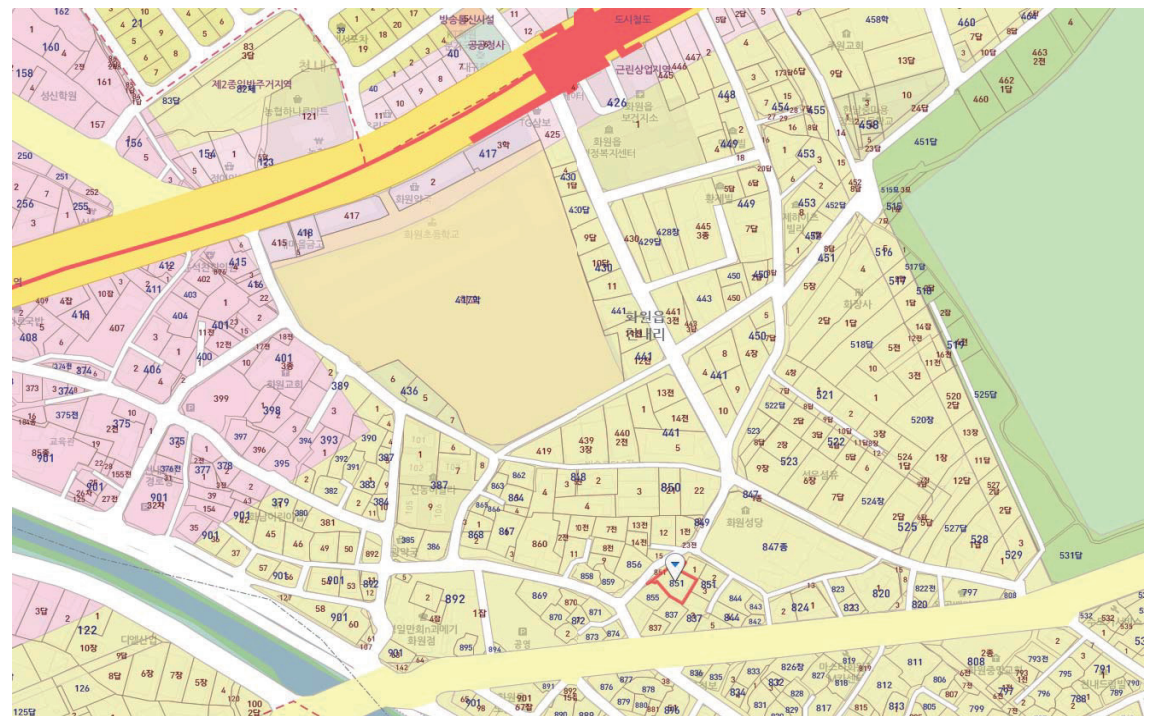
사업계획 구상도



위 치 도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



사 진 대 지



Ⅱ. 검토의견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됨에 따라,
- 본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들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위에 화원읍 천내1, 2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천내1리쪽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여건이 되면, 천내2리쪽에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이번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 커뮤니티 공간 신축건은 이미 대상위치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월 2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0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민 생활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및 성서5차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녹지과 내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등 아동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희망지원과 내 아동팀을 신설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팀 신설 등 2020. 7. 1.일자 달성군 보건소 확장 이전에 따른 보건소 직제 개편을 주요 목적으로 함.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2020년 기준인건비 변동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및 성서5차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고,
- 아동학대 등 아동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희망지원과에 아동팀을 신설하며,
-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전문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과에 치매관리팀 신설과 군 보건소 확장 이전에 따른 보건소 직제를 개편코자 합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경제환경국)제2항제5호 중 “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을
“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로 한다.

제7조(주민복지국)제2항제3호 중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를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으로 한다.

제9조(정책관광국)제2항제3호 중 “문화예술·체육진흥·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문화예술·체육진흥·문화체육시설”로 한다.

제11조(소장)제3항제1호 중 “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의약관리·감염예방·가족보건”을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예방·진료지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지역건강·건강생활·노인
건강”을 “건강증진·질환관리·가족보건·치매관리·건강증진센터운영”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경제환경국) ① (생략)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u>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u> ---
제7조(주민복지국) ① (생략)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u> 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7조(주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u> ----- 7. (현행과 같음)
제9조(정책관광국) ① (생략) ② 정책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u>문화예술·체육진흥·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u> 등에 관한 사항 4.·5. (생략)	제9조(정책관광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문화예술·체육진흥·문화체육시설</u> ----- 4.·5.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u>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의약관리·감염예방·가족보건</u> 2. <u>지역건강·건강생활·노인건강</u>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u>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예방·진료지원</u> 2. <u>건강증진·질환관리·가족보건·치매관리·건강증진센터운영</u> 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월 2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급속한 인구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담당부서 신설 등으로 기구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인력 일부를 증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927명 → 963명 (증36)
 - 집행기관 정원 : 913명 → 949명 (증36)
 - ※ 의회 정원 변동 없음(14명)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인구 급증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담당 부서 신설 등 기구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력 일부를 증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중 총 정원 927명을 963명으로 증원하고,
-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13명을 949명으로 증원하는 등 총 36명을 증원하며,
- 직급별 정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 정원을 6급 7명, 7급 14명, 8급 1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27” 을 “963”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13” 을 “949” 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927</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13</u> 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u>963</u> ----- ----- 1. ----- : <u>949</u> 명

【 별표 3 】(개정 2020. 03. 0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927963	584611	14	98107	176	55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898934	579606	14	7483	176	55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7	2	4	7	3
6급이하 계	846882	546573	11	6978	168	52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2020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 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일반직 공무원 증원 36명(6급 +7, 7급 +14, 8급 +15)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9,356,304천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 년도까지 총 9,356,304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9,356,304천 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계
세 입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지 방 세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의존재원							
세 출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인 건 비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자원 조달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1,734,346	1,800,251	1,868,660	1,939,669	2,013,377	9,356,304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월 2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함.
- 장기재직휴가 일수 현행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분리·신설(안 제23조 제2, 3항)
- 유·사산 휴가의 일수·대상 확대 등(안 제23조 제11항)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23조 제14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자녀기준 완화(안 제23조 제17항)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현행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3조 제2, 3항에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분리·신설
- 안 제23조 제11항에 유·사산 휴가의 일수·대상 확대 등
- 안 제23조 제14항에 장기재직휴가 확대
- 안 제23조 제17항에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자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5. 남성공무원의 경우 3일

제23조에 제14항 제1, 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단, 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제23조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신 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 ⑩ (생 략)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 5. (생 략) <신 설>	제2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삭 제>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까지와 같음) 5. 남성공무원의 경우 3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월 2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여비기준을 규정하여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여비 지급 기준 신설
(제2조, 별표2)
- 별표를 별표1로, 별표 중 비고4 일부 정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대상업무 및 여비기준을 규정하여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와 별표2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대상 업무 및 여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 별표를 별표1로, 별표 중 비고4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중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 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 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 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 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 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 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 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 별표 1----- -----.

【별표 2】(신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월 2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포읍(서한이다음, 688세대) 및 현풍읍(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38세대)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이장 정수 및 반 수 증가

4. 주요내용

- 라반 조정 : 2개리 38반 신설(314리 ⇨ 316리, 2,677반 ⇨ 2,715반)

읍 면	기 존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옥 포	교 항 2 리	4	교 항 2 리	4	1	18	
			교 항 8 리 (서 한 이 다 음)	18			
현 풍	대 3 리	2	대 3 리	2	1	20	
			대 4 리 (국가산단 서한이다음)	20			

- 리·반 조정 : 증 2
 - 옥포읍 : 교항8리
 - 현풍읍 : 대4리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옥포읍(서한이다음, 688세대) 및 현풍읍(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38세대)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이장 정수 및 반 수 증가를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옥포읍에 신설된 아파트 ‘서한이다음’을 교항2리에서 교항8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18개반을 신설하였고,
- 현풍읍에 신설된 아파트 ‘국가산단 서한이다음’을 대3리에서 대4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20개반을 신설하여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 신설된 2개리에 대해 안 제4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8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7리 교항8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읍 소계	9	27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풍읍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대 리	4	대1리 대2리 대3리 대4리
	신기리	1	신기리
현풍읍 소계	11	37	37

【별표3】

리 반 의 명 칭 및 관 할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교항8리 <신설>	제1반	2984(서한이다음) 501동 101호 ~ 1303호
		2	2984(서한이다음) 501동 105호 ~ 1207호
		3	2984(서한이다음) 502동 101호 ~ 1203호
		4	2984(서한이다음) 502동 105호 ~ 1107호
		5	2984(서한이다음) 503동 101호 ~ 1503호
		6	2984(서한이다음) 503동 105호 ~ 1007호
		7	2984(서한이다음) 504동 101호 ~ 1802호
		8	2984(서한이다음) 504동 103호 ~ 1805호
		9	2984(서한이다음) 504동 106호 ~ 1807호
		10	2984(서한이다음) 505동 101호 ~ 1802호
		11	2984(서한이다음) 505동 103호 ~ 1805호
		12	2984(서한이다음) 505동 106호 ~ 1807호
		13	2984(서한이다음) 506동 101호 ~ 1503호
		14	2984(서한이다음) 506동 105호 ~ 1507호
		15	2984(서한이다음) 507동 101호 ~ 1702호
		16	2984(서한이다음) 507동 103호 ~ 1705호
		17	2984(서한이다음) 508동 101호 ~ 1503호
		18	2984(서한이다음) 508동 105호 ~ 1507호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읍	대4리 <신 설>	제1반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1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2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1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3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2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4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2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5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3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6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3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7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4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8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4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9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5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10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5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11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6동 201호~2501호, 202호~2502호
		12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6동 203호~2503호, 205호~2505호
		13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7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14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7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읍	대4리 <신설>	15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8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16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8동 203호~2503호, 105호~2505호
		17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9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203호~2503호
		18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10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9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11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20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11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옥포읍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7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7리		교항리	8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교항6리 교항7리 교항8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읍 소계	9	26		옥포읍 소계	27	27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풍읍	상 리	2	상1리 상2리	현풍읍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하 리	1	하 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현행				개정안			
읍면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읍면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현풍읍	자모리	1	자모리	현풍읍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리	2	지1리 지2리		지리	2	지1리 지2리
	대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대리	4	대1리 대2리 대3리 대4리
	신기리	1	신기리		신기리	1	신기리
현풍읍 소계	11	36	36	현풍읍 소계	11	37	37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읍	<신설>			옥포읍	교항8리	제1반	2984(서한이다음) 501동 101호 ~ 1303호
						2	2984(서한이다음) 501동 105호 ~ 1207호
						3	2984(서한이다음) 502동 101호 ~ 1203호
						4	2984(서한이다음) 502동 105호 ~ 1107호
						5	2984(서한이다음) 503동 101호 ~ 1503호
						6	2984(서한이다음) 503동 105호 ~ 1007호
						7	2984(서한이다음) 504동 101호 ~ 1802호
						8	2984(서한이다음) 504동 103호 ~ 1805호
						9	2984(서한이다음) 504동 106호 ~ 1807호
						10	2984(서한이다음) 505동 101호 ~ 1802호
						11	2984(서한이다음) 505동 103호 ~ 1805호
						12	2984(서한이다음) 505동 106호 ~ 1807호
						13	2984(서한이다음) 506동 101호 ~ 1503호
						14	2984(서한이다음) 506동 105호 ~ 1507호
						15	2984(서한이다음) 507동 101호 ~ 1702호
						16	2984(서한이다음) 507동 103호 ~ 1705호
						17	2984(서한이다음) 508동 101호 ~ 1503호
						18	2984(서한이다음) 508동 105호 ~ 1507호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현풍읍	<신설>			현풍읍	대4리	제1반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1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2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1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3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2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4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2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5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3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6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3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7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4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8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4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9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5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10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5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11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6동 201호~2501호, 202호~2502호
						12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6동 203호~2503호, 205호~2505호
						13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7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현풍읍	<신설>			현풍읍	대4리	제14반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7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15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8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16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8동 203호~2503호, 105호~2505호
						17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09동 101호~2501호, 102호~2502호 203호~2503호
						18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10동 201호~25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9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11동 101호~2501호, 202호~2502호
						20	1176(국가산단 서한이다음) 111동 103호~2503호, 105호~2505호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국가산단 서한이다음 아파트 관리소 및 주민 일동	○ 현풍읍 대리 1176번지 소재 신설 아파트 명이 “서한e스테이” 로 입법 예고중인데 공식 아파트 명이 “국가 산단 서한이다음” 이므로 변경바람.	○ 반영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명칭이 “국가산단 서한 이다음” 으로 등재되어 있어 아파트 명 변경 의견 반영

